

**2019학년도 제2차**  
**<제340차 이사회 회의록>**

**2019. 6. 20.**

**학교법인 대우학원**

# 학교법인 대우학원

## 2019학년도 제2차

### <제340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2 인	2 인

1. 일 시 : 2019. 6. 20(목) 07:30 ~ 09:30 (회의소집 통보일 : 2019년 6월 12일)

2. 장 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카멜리아룸(2층)

### 3. 임원 출·결 사항

####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김 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홍, 박형주, 김선용 (12인)
- 감사 : 문휘창, 윤경식 (2인)

###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무부총장 유희석, 교무처장 권용진,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병원장 한상욱 행정부원장 임홍식(5인)
- 아주자동차대학 : 교학기획처장 전지용, 행정처장 최종범 (2인)
- 법인사무처 : 사무처장 박재호, 신창규(2인)

###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두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권용진 교무처장, 박준성 기획조정실장이 각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 -

윤성복

이사

이영현

##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40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기획팀>-121호(2019. 6.12)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의안 제2호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3호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4호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5호 2019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6호 2019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승인(안), 의안 제7호 아주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 동의(안), 의안 제8호 대우학원 임원 및 이사장 선임(안)의 8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 8. 심의내용

### 제 1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교무처장 권용진 : 먼저,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추가하였고 강사의 계약기간을 명시하였으며, 강사의 임용권을 총장께 위임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교원이 비위 관련으로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의원면직을 통해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의원면직에 대한 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성관련 비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성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성 진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박 상 일 이 사 이 영 현

▣ 대우학원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46조 (임용) 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총장은 임용 당시 65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 임기 중에는 교원의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② 총장 이외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lt;살 입&gt;로 구분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원의 임용권 중 동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다.</p> <p>1.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 2. 면직 중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46조 (임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총장 이외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u>강사</u>로 구분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원의 임용권 중 동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다.</p> <p>1.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 2. 면직 중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 3. <u>강사의 임용</u></p>
<p>제48조 (교원의 임용기간) 교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p> <p>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교수 : 4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48조 (교원의 임용기간) 교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p> <p>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교수 : 4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4. <u>강사 :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u> <u>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54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의</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성현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u>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li> <li>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li> <li>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li> <li>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li> </ol> <p>②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p>
<p>제70조 (징계의결의 기한) &lt;삽입&gt;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lt;삽입&gt;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제70조 (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리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p>
<p>제77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lt;삽입&gt;, 교육공</p>	<p>제77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경우</p>

<간서명란>

이사장

추노석

이사

박정국

이사

이명현

현 행	개 정
무원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제46조 및 제48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제 2 호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제 3 호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제 4 호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이 사 장 : 의안 제2호 안전부터 제4호 안전은 정관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 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 일괄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안전 순서대로 아주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 권용진 :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동일한 내용으로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추가하고 강사의 인사 관련 사항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교학기획처장 전지용 : 교원을 전임교원, 특별임용교원, 강사로 구분하고 교원별 정의를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강사의 인사 관련 사항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최 홍 :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태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정국

이사

이영현

가.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특별임용교원<u>으로</u> 구분한다.</p> <p>1. ‘전임교원’ 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대우학원 정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u>으로</u>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한다.</p> <p>2. ‘특별임용교원’ 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간을 정하여 특별임용된 자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2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특별임용교원 <u>및 강사</u>로 구분한다.</p> <p>1. 내지 2. (현행과 같음)</p> <p>3. ‘강사’ 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정관 제48조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p>
<p>제3조(적용)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특별임용교원 및 의료원 교원에 대하여는 규정 <u>으로&lt;삽 입&gt;</u> 따로 정한다.</p>	<p>제3조(적용)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특별임용교원 및 의료원 교원에 대하여는 규정 <u>으로, 강사에 대하여는 규칙으로</u> 따로 정한다.</p>
	<p><u>부 칙</u></p> <p>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p>

나.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 2 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정년보장 여부에 따라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u>&lt;삽 입&gt;으로</u>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진료중점교수로 구분한다.</p>	<p>제 2 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정년보장 여부에 따른 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u>과 강사</u>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진료중점교수로 구분한다.</p>
<p>제 3 조(적 용) 이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이하 “교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하고, 비정</p>	<p>제 3 조(적 용) 이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이하 “교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하고, 비정</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국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삽입> 따로 정한다.	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u>강사에 대하여는 규칙으로</u> 따로 정한다.
제 4 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의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 4 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의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 <u>대학교원</u> 자격기준 등에 관한 <u>규정</u>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b>부칙</b>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2조(교원의 구분) ① 정관 제 46조 제2항의 교원은 정년트랙교원과 비정년트랙교원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 1. [삭제 2017.8.30.] 2. [삭제 2017.8.30.] <u>&lt;신설&gt;</u>  <u>&lt;신설&gt;</u>  <u>&lt;신설&gt;</u>	제2조(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특별임용교원 및 강사로 구분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전임교원' 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대우학원 정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로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구분한다. 4. '특별임용교원' 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간을 정하여 특별임용된 자를 말한다. 5. '강사' 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정관 제48조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년트랙 교원에게 적용하고,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년트랙 교원에게 적용하고, 비정년트랙 교원 및 특별임용교원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강사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b>부칙</b>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8 -

박영국

이사

이영현



제 5 호 2019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9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받의.  
 교학기획처장 전지용 :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2018회계 연도 교비회계 결산 이후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을 반영하여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사무실 구축에 따른 건축물관리비 130,000천원, 베트남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출장비 10,000천원, 2주기 기관평가인증 수수료 14,000천원 등을 지출로 증액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238,467천원이 증가한 10,678,65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윤경식 : 건물에 있는 석면은 해체하고 철거를 해야 할 텐데, 이번에 진행하는 3층 외 나머지 2개 층에 대한 작업 계획은 있으신가요?  
 행정처장 최종범 : 예산 관계로 이번에는 통합사무실만 진행하고 2개 층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 장 : 감사님 검토 의견 외에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윤성복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9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9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등록금수입	6,447,682	6,447,682	-
	전입및기부수입	2,629,757	2,629,757	-
	교육부대수입	961,370	961,370	-
	교육외수입	142,518	142,518	-
	투자및기타자산수입	26,000	26,000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71,329	232,862	238,467
	계	10,678,656	10,440,189	238,467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9 -

이영현

이사

이영현

구분	관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감
지출	보수	4,302,930	4,302,930	-
	관리운영비	2,375,737	2,221,737	154,000
	연구학생경비	3,441,644	3,441,644	-
	교육외비용	50,366	50,366	-
	예비비	56,000	56,000	-
	투자외기타자산지출	20,000	20,000	-
	고정자산매입지출	127,650	114,650	13,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304,329	232,862	71,467
	계	10,678,656	10,440,189	238,467

### 제 6 호 2019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승인(안)

이 사 장 : 2019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승인(안) 받의.

교무처장 권용진 : 본교 정년트랙 신규임용 대상자는 3명이며, 재임용 대상자는 정년트랙 7명, 비정년트랙 3명으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1명은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임용 대상자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의료원 정년트랙 신규임용 대상자는 1명이며, 재임용 대상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총 4명으로 조교수 2명, 부교수 2명입니다. 재임용 대상자 모두 최소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문 길 주 :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국내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주로 선발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해외 학위를 취득한 인재도 선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사(총장) 박형주 : 매년 한미과학자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인력들이 구직을 위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열리는 이 대회에 참여하여 대학홍보 부스도 설치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들을 리크루팅할 계획입니다.

이사(총장) 박형주 : 나누어 드린 별지를 보시면 후보자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한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후보자는 보안상 논문 발표가 어려운 근무 여건으로 인해 인용지수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높은 수준의 연구력을 보여주었다는 판단에 따라 후보자로 선정하였고, 물리학과 후보자의 FWCI 인용지수는 세계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대상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고 있는지 세계평균 1과 비교한 수치로써 세계대학평가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평가기준입니다. 앞으로 신입교원을 선발할 때 이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수준 높고 많이 인용되는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후보자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사 신 상 협 :**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후보자는 잠재력을 고려하여 선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수년 내에 인용지수가 1을 넘어야 한다는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한다면 불확실한 잠재력 평가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무처장 권용진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9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제임용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박종호	조교수	2019.9.1.~2023.8.31.(4년)
	물리학과	이형우	조교수	2019.9.1.~2023.8.31.(4년)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진	부교수	2019.9.1.~2022.8.31.(3년)
의료원	의학과(응급의학과교실)	김혁훈	조교수	2019.9.1.~2023.8.31.(4년)

- 이상 본교 3명, 의료원 1명 -

**나. 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종현	조교수	2019.9.1.~2023.8.31.(4년)
	교통시스템공학과	윤일수	부교수	2019.9.1.~2025.8.31.(6년)
	건축학과	김진영	조교수	2019.9.1.~2023.8.31.(4년)
	소프트웨어학과	황원준	조교수	2019.9.1.~2023.8.31.(4년)
	물리학과	이지은	조교수	2019.9.1.~2023.8.31.(4년)
	e-비즈니스학과	이철	부교수	2019.9.1.~2025.8.31.(6년)
	금융공학과	김하영	조교수	2019.9.1.~2023.8.31.(4년)
	신소재공학과	Shankara S. Kalanur	(연구중점) 조교수	2019.9.1.~2022.8.31.(3년)
	경영학과	김기민 (Kimin Kim)	(교육중점) 조교수	2019.9.1.~2022.8.31.(3년)
	다산학부대학	Philip Chivers	(교육중점) 조교수	2019.9.1.~2022.8.31.(3년)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진

이사

이영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의료원	영상의학교실	김보현	조교수	2019.9.1.~2023.8.31.(4년)
	간호학과	안정아	조교수	2019.9.1.~2023.8.31.(4년)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	이상운	부교수	2019.9.1.~2025.8.31.(6년)
	가정의학과교실	주남석	부교수	2019.9.1.~2025.8.31.(6년)

- 이상 본교 10명, 의료원 4명 -

### 제 7 호 아주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 동의(안)

( 아주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 동의(안)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하다. )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정국

이사

이영현

## 제 8 호 대우학원 임원 및 이사장 선임(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임원 및 이사장 선임(안) 발의.

본인의 임기만료 예정으로 인한 후임 이사 및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결 제척사유에 따라 저는 잠시 퇴장하겠습니다. 선임 의결은 이영현 상임이사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호석 이사장 회의장에서 퇴장하다.)

임시의장 이 영 현 : 먼저 추호석 이사장님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문 길 주 : 업적, 능력, 사회적 활동 및 개인적인 인품 등을 고려하여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해 오신 추호석 이사장님의 이사 연임을 제청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태 :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11인이 찬성하다. )

임시의장 이 영 현 : 그러면 참석이사 12인 중 본인을 제외한 11인의 찬성으로 추호석 이사장님을 2019.9.18일부터 임기 4년의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추호석 이사장 회의장으로 입장하다. )

이 사 장 : 대우학원 이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취임을 승낙합니다.

임시의장 이 영 현 : 다음으로 이사장 선임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들께서 후임 이사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박 상 일 : 그동안 대우학원을 잘 이끌어주신 추호석 이사장님의 연임을 제청합니다.

이 사 김 성 진 :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임시의장 이 영 현 : 그러면 참석이사 12인의 호선으로 추호석 이사장님을 2019.9.18일부터 이사 재임기간 동안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이 사 장 : 대우학원 이사장으로 재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우학원 및 산하기관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임원 분들의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 대우학원 임원 신·구 대비표

현 행				변 경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추호석	2015.9.18 ~ 2019.9.17		이사장	추호석	2019.9.18 ~ 2023.9.17	
이사	김성진	2019.6.4 ~ 2023.6.3	교육이사	이사	김성진	2019.6.4 ~ 2023.6.3	교육이사
이사	윤성복	2017.4.28 ~ 2021.4.27		이사	윤성복	2017.4.28 ~ 2021.4.27	
이사	문길주	2016.3.31 ~ 2020.3.30		이사	문길주	2016.3.31 ~ 2020.3.30	
이사	신희택	2018.2.15 ~ 2022.2.14	교육이사	이사	신희택	2018.2.15 ~ 2022.2.14	교육이사
이사	김성	2017.2.7 ~ 2021.2.6	교육이사	이사	김성	2017.2.7 ~ 2021.2.6	교육이사
이사	박상일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사	박상일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사	신상협	2016.3.19 ~ 2020.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사	신상협	2016.3.19 ~ 2020.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사	최홍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사	최홍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사	이영현	2017.4.19 ~ 2021.4.18		이사	이영현	2017.4.19 ~ 2021.4.18	
이사	박형주	2018.8.10 ~ 2022.8.9	교육이사	이사	박형주	2018.8.10 ~ 2022.8.9	교육이사
이사	김선용	2016.2.7 ~ 2020.2.6		이사	김선용	2016.2.7 ~ 2020.2.6	
감사	문휘창	2017.6.29 ~ 2020.6.28	개방감사	감사	문휘창	2017.6.29 ~ 2020.6.28	개방감사
감사	윤경식	2019.6.4 ~ 2022.6.3	공인회계사	감사	윤경식	2019.6.4 ~ 2022.6.3	공인회계사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40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와 이영현 이사, 박형주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박형주를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40차 이사회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 09시 3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

2019 년 6 월 20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호석
이 사	김 성 진	김성진
이 사	윤 성 복	윤성복
이 사	문 길 주	문길주
이 사	신 희 택	신희택
이 사	김 성	김성
이 사	박 상 일	박상일
이 사	신 상 협	신상협
이 사	이 영 현	이영현
이 사	최 흥	최흥
이 사	박 형 주	박형주
이 사	김 선 용	김선용
감 사	문 휘 창	문휘창
감 사	윤 경 식	윤경식